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접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여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편집자주]

▶▶ 공포 및 시행

- 공포일 : 2017. 3. 21.
- 시행일 : 2017. 9. 22.

▶▶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제재 강화(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 제재 강화
 - 재등록 결격기간 연장 : 5년 → 10년
 - 형사처벌 강화 : 3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
 - 무등록 건설업자 형사 처벌 강화 : 3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
 - 무등록 건설업체와 공모한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의무 부여 및 형사 처벌 대상 포함
- 공공발주자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부과(제28조의2)
 -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함
 - 단,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자가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제83조제13호)
 -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추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경매·입찰·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 신·구 대조표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708호, 2017.3.21., 일부개정]
<p>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p> <p>1. · 2. (생략)</p> <p>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p> <p>가. <u>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 제3호의3 · 제5호 · 제8호 · 제10호 및 제13호</u>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u>5년</u>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나. <u>제83조제2호</u>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u>2년 6개월</u>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다. <u>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 제3호의3 · 제4호 · 제5호 · 제8호 · 제10호 및 제13호 외의</u>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가. <u>제83조제5호</u> ----- 10년 -----</p> <p>나. <u>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 제3호의3 · 제8호 · 제10호 및 제13호</u> ----- 5년 -----</p> <p>다. <u>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u> ----- 2년 -----</p>



〈신 설〉

4. ~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생 략)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 제3호의3 · 제4호 · 제5호 · 제8호 ·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생략)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1.5.24]

[〈신설〉](#)

[〈신설〉](#)

[〈신설〉](#)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생략)

3.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 6.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전문개정 2011.5.24]

제96조(벌칙) ----- .

[〈삭제〉](#)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6. (현행과 같음)